

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(의안번호 제2950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5. 9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5. 5. 9.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25. 5. 22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관광진흥과장 장찬호)

가. 제안이유

- 2026년 4월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고성군 해양치유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해양치유 및 경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업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
-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·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해양치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나. 위탁근거

- 1) 「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(위탁운영)
- 2)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, 제5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, 제6조(군의회 동의 및 보고)

다. 주요내용

- 1) 위탁사무명: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
- 2) 위탁대상: 고성군 해양치유센터
 - 위치: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(자란도) 108번지 일원
 - 연면적: 6,080.95㎡(대지면적 19,385.00㎡)
 - 시설규모: 1개동(지하 1층, 지상 3층)

- . 지하 1층: 기계실, 전기실
 - . 1층: 세탁실, 검사실, 상담실, 탈의실, 샤워실, 1종근린생활시설, 린넨 창고, 식당 등
 - . 2층: 치유실(숙박), 요가/명상실, 마인드풀, 탄산풀, 개별치유실, 다목적풀, 쾌각찜질실, 소금찜질실 등
 - . 3층: 치유실(숙박), 사무실, 회의실, 공유오피스, 피트니스, 다목적홀, 강의실 등
- 3) 위탁기간: 위탁일로부터 3년(예정: 2026. 4. ~ 2029. 3.)
 - 4) 위탁방법: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
 - 5) 위탁사무의 범위: 해양치유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
 -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·개발 지원
 - 해양치유센터 시설 내·외부 유지 관리 지원
 - 주요 치유시설, 숙박시설, 식당, 공유오피스, 편의시설 등의 운영

라. 추진일정

- 1) 2025. 5.: 해양치유센터 운영 위탁 군의회 동의
- 2) 2025. 6. ~ 8.: 해양치유센터 운영 위탁 사업자 공모
- 3) 2025. 12.: 해양치유센터 종합경영관리 매뉴얼 개발
- 4) 2026. 4.: 해양치유센터 설비 등 시범운영(가동 점검 등)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장혜정)

- 고성군 해양치유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-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5조 및 「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되므로 고성군 해양치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5. 22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